

-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추진 기반 조성 -  
**2025. 7. 1.자 조직개편 추진 보고**

기획조정실 | 행정관리담당관 박진수☎2282-8500 팀장 이윤정☎8641 담당 최두환☎8643

## I 개요

### ① 추진배경 및 목적

- 1차 조직개편 이후 중기과제로 남긴 2단계 조직개편 추진

단 계	시 기	방 향
1단계	202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규칙 개정 범위 내에서 가능한 조직개편</li><li>▶ 실·국·과별, 중복·유사·공백업무 등 분장사무 조정</li><li>▶ 통솔범위 등을 감안 대과 부서 업무 조정</li><li>▶ 교육감 교육정책이 드러날 수 있도록 부서(팀) 명칭 변경</li></ul>
2단계	2025.7.1.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단계 조직개편 이후 도출된 미비점 보완</li><li>▶ <b>교육지원청 학교지원기능 강화</b></li><li>▶ 새로운 교육수요 등 감안 조직 설계</li></ul>

- 교육환경 변화에 맞는 교육지원청 기능(역할)의 재정립으로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추진 기반 조성
- 교육지원청 재구조화를 통해 학생과 학교지원기능 강화 추진

## ② 추진 경과

- ('25. 3. 19.) 조직개편 실무추진TF 전체회의
- ('25. 3. 19. ~ 5. 8.) 1분과(10회) 및 2분과(15회) 회의

1분과(본청 기능개선 분과)	2분과(교육지원청 기능개선 분과)
✓정책정비, 권한위임, 사무이관 분석	✓지원청 조직 재구조화 방안 협의

- ('25. 3. 28., 4. 1.) 소통협의체 회의(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 정책·사업 정비 현황, 부서별 주요 의견 및 상호 협력 방안 등 논의
- ('25. 4. 1. ~ 3.) 본청 부서별 소관 사무 중 교육지원청 위임 가능 사무에 대한 의견수렴
- ('25. 4. 2.) 교육감님, 4월 확대전략회의 시 조직개편 방향 말씀

< 4월 확대전략회의 시 교육감님 말씀 >

“조직개편의 핵심 원칙은 학교자치 강화 및 학교 현장에 초점을 맞춘 개편”

- ('25. 4. 7.)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의견수렴
- ('25. 4. 10.) 조직개편추진단 회의
- ('25. 4. 17.) 교육감 - 조직개편추진단 회의
- ('25. 4. 18.) 소통협의체 회의(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 ('25. 4. 21.) 조직개편 관련 교육장 의견수렴
- ('25. 4. 21.) 조직개편추진단 - 자문단 회의
- ('25. 4. 24.) 조직개편추진단 회의
- ('25. 5. 9.)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의견수렴
- ('25. 5. 12.) 조직 개편(안) 확정  
※ 입법예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5. 19. ~ 5. 26.),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5. 27. ~ 6. 4.)
- ('25. 6. 10.) 법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25. 6. 26.)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정원 규칙 공포(예정)

### 3 개편 방향

가르침과 배움에 전념하는 학교를 위한  
협력교육의 새 지평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학생 곁으로! 학교 가까이! 미래로 한걸음!

학생 곁으로!

온전한 배움과 성장



(개편) 학생맞춤협력과  
학생맞춤지원체계 강화

(개편) 학교생활교육과  
예방중심 생활교육 회복

학교 가까이!

행정업무 경감  
교육활동 집중



(신설) 학교통합지원과  
실감나는 행정업무경감

(개편) 학교생활교육과  
교육활동보호 내실화

미래로 한걸음!

새로운 시대  
유연한 대응



유보통합시대 기반 조성

지역 특수성 반영

## II 조직개편 주요 내용

### 1 주요 개편 내용

#### < 교육지원청 개편 조직도 >

< 현재 > 2국 8과

교육지원국			
<del>학교통합 지원센터</del>	<del>교육협력 복지과</del>	초등교육 지원과	중등교육 지원과

행정지원국			
행정 지원과	재정지원과	평생교육 건강과	학교시설 지원과
	재정·안전관리		
	회계관리		
	노무관리		

< 개편 > 2국 9과

교육지원국			
초등교육 지원과	중등교육 지원과	개편학교생활 교육과	개편학생맞춤 협력과



행정지원국				
행정 지원과	신설학교 통합지원과	개편재정 지원과	평생 교육 건강과	학교 시설 지원과
		재정관리		
		회계관리		

※ 유보통합 주관부서: 재정지원과

#### < 교육지원청별 특수성 반영 >

##### < 교육지원청별 특수성 반영 >

✓ 다문화(남부) ✓ 학생배치(강동송파, 강서양천) ✓ 사교육지도(강남서초)

(남부) 다문화지원 강화			(강동송파, 강서양천) 적정규모 학생배치 강화				(강남서초) 학원관리 강화	
개편학생맞춤협력과			강동송파 행정지원과		강서양천 행정지원과		평생교육건강과	
학생맞춤 지원	협력 지원	신설 다문화 지원	학생 배치	신설 학교설립 기획	학생 배치	신설 목동재건축 학교설립	개편평생교육· 학원설립	신설평생교육· 학원지도

## 2 부서별 개편 방향

### 1 학교통합지원센터 ➡ (개편) 학교생활교육과

#### ★ 개편 방향

- ☞ 사안처리 중심에서 관계회복·예방 중심의 생활교육 강화
- ☞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등 교육활동보호 지원 체계 내실화

#### < 부서 개편안 >

학교통합지원센터		개편 학교생활교육과	
교육활동· 행정지원	생활· 인권지원	교육활동 보호지원	생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맞춤 통합지원(이관→)</li> <li>▸ 통합지원 콜센터(이관→)</li> <li>▸ 교육활동 보호</li> <li>▸ 아동학대 예방</li> <li>▸ sem 119</li> <li>▸ 학업중단예방(이관→)</li> <li>▸ 대안교육지원(이관→)</li> <li>▸ 생명존중교육</li> <li>▸ 행정지원(호봉 등)(이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 사안처리</li> <li>▸ 학교폭력 제로센터</li> <li>▸ 학교폭력 예방교육</li> <li>▸ 생활교육</li> <li>▸ 학생인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활동 보호</li> <li>▸ sem 119</li> <li>▸ 교원 마음건강지원</li> <li>▸ 생명존중교육</li> <li>▸ 아동학대예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생활교육</li> <li>-생활교육컨설팅</li> <li>-관계회복·조정</li> <li>▸ 학교폭력 예방교육</li> <li>▸ 학교폭력 사안처리</li> <li>▸ 학교폭력 제로센터</li> <li>▸ 학생인권</li> </ul>

#### ○ 개편 내용

- 학교통합지원센터를 「학교생활교육과」로 개편하여 교육활동 보호 및 생활교육 기능 강화
  - ⇒ '학교통합지원', '행정지원' 업무 → 「<sup>신설</sup>학교통합지원과」로 이관,
  - '학업중단예방', '대안교육지원' 업무 → 「<sup>개편</sup>학생맞춤협력과」로 이관
  - ⇒ 타 부서로의 업무이관 및 부서 내 업무 재구조화를 통해 학교폭력 심의 대응체계 개선 및 4주 이내 심의율 향상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관계회복·예방 중심의 생활교육 강화

- ⇒ 기존의 사안처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생활지도, 관계회복, 학생 갈등 조정 및 인권교육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 생활교육 중심 조직으로 재정립
- ⇒ 선제적 예방교육과 관계회복 중심 개입을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

- **실효성있는 교육활동 보호 체제 내실화 및 강화**

- ⇒ 교육활동침해 예방과 대응강화를 위한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SEM119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으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 교육활동 보호 선제적 대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전문성 확립, 교육활동 침해 대응 법률 지원 확대 및 강화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 보호

## ② 교육협력복지과 ➡ (개편) 학생맞춤협력과

### ★ 개편 방향

- ☞ 기초학력, 학생심리·정서, 학업중단 등 학생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 공고화
- ☞ 학부모, 시민, 지역사회 등과의 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도모로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구축

### < 부서 개편안 >

교육협력복지과		개편 학생맞춤협력과	
교육협력	교육복지	학생맞춤지원	협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맞춤 통합지원</li> <li>▶ 미래교육지구</li> <li>▶ 학습진단 성장센터</li> <li>▶ 지역교육 복지센터</li> <li>▶ Wee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과후 돌봄, 늘봄</li> <li>▶ 학부모회</li> <li>▶ 학운위</li> <li>▶ 교육비 지원</li> <li>▶ 교육급여</li> <li>▶ 초·중 무상교과서 수급(이관→)</li> <li>▶ 입학준비금(이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맞춤 통합지원</li> <li>▶ 학습진단 성장센터</li> <li>▶ 지역교육 복지센터</li> <li>▶ Wee센터</li> <li>▶ 학업중단예방(←이관)</li> <li>▶ 대안교육지원(←이관)</li> <li>▶ 미래교육지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늘봄(방과후, 돌봄)</li> <li>▶ 학부모회</li> <li>▶ 학운위</li> <li>▶ 교육비 지원</li> <li>▶ 교육급여</li> </ul>

### ○ 개편 내용

- 학생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학업중단예방', '대안교육지원' 등 분절적인 학생 지원 기능 일원화
- '무상교과서 수급', '입학준비금' 업무는 「<sup>신설</sup>학교통합지원과」로 이관
- 「협력지원팀」 신설을 통해 학부모, 시민, 지역사회 등과의 교육 거버넌스 강화 기반 마련

### ③ 재정지원과 ➡ (개편) 학교지원 역량 강화

#### ★ 개편 방향

- ☞ 재정, 회계 등 고유기능 회복을 위한 사무 조정을 통해 학교지원 역량 강화
- ☞ 교육지원청별, 자치구 단위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 인력 배치로 성공적인 유보통합 여건 조성

#### < 부서 개편안 >

재정지원과			개편재정지원과	
<del>재정·안전 관리</del>	회계관리	<del>노무관리</del>	재정관리	회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관리</li> <li>▸ 재산관리</li> <li>▸ 사립유 회계</li> <li>▸ 재난(산업) 안전(이관→)</li> <li>▸ 통학로안전 (이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 관리</li> <li>▸ 물품 관리</li> <li>▸ 급여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전보(이관→)</li> <li>▸ 인건비 (이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관리</li> <li>▸ 재산 관리</li> <li>▸ 사립유 회계</li> <li>▸ 유보통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 관리</li> <li>▸ 물품 관리</li> <li>▸ 급여 관리</li> </ul>

#### ○ 개편 내용

- 학교지원 사무 중 「<sup>신설</sup>학교통합지원과」로 배치 시, 효율성과 현장 대응성이 증대되는 업무 이관 ⇨ 안전, 공무원 관리 등
- '27년 유보통합 대비, 교육부에서 배정한 사전준비인력 배치 ⇨ 성공적인 유보통합 및 교육지원청 전담조직 구성을 위한 기반 조성

#### ※ 유보통합 관련 주요사무

- 자치구 영유아 보육 조직, 정원, 사무, 재산 등 이관 추진
-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분석 및 이관 추진
- 관내 어린이집 지원 체계 조사 및 분석 등

#### ④ (신설) 학교통합지원과

##### ★ 신설 방향

- ☞ 학교의 교육·행정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열린 창구로 학교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
- ☞ 행정절차 간소화 및 공통업무의 교육지원청 이관으로 학교 업무 부담 최소화

##### < 운영 방향 >

- ◆ (현장우선 종합행정) 학교 현장의 요구사항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적 지원
- ◆ (경감 업무 발굴개선) 학교 현장의 수업 집중도와 업무 경감 체감도 향상을 위한 경감 업무의 지속 발굴·개선
- ◆ (컨트롤타워 일원화) 정책기획관 '학교업무개선팀' 주관의 일사불란한 현장지원 안착화

##### 「신설 학교통합지원과」 업무분장(안)

통합지원 1팀(4명) [업무 총괄 및 학생 교육·안전]	통합지원 2팀(3명) [교원 및 교직원 대체인력 관리]	통합지원 3팀(4명) [공무직, 정보화 및 용역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통합지원 기획·운영</li> <li>▸ 학교지원 콜센터</li> <li>▸ 범교과 학습 인력풀 지원</li> <li>▸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 (사전답사 지원 등)</li> <li>▸ 생존수영</li> <li>▸ 소방합동훈련</li> <li>▸ 안전업무(통학로, 재난, 산업안전)</li> <li>▸ 학교 신규업무 발굴 및 모니터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인력 채용 지원(4종)</li> <li>▸ 교원 정기승급 및 호봉재확정</li> <li>▸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성과상여금</li> <li>▸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직 관리(노무관리)</li> <li>▸ 교과서 수급</li> <li>▸ 입학준비금(초등)</li> <li>▸ 교복구매지원(중·장기)</li> <li>▸ 정보화업무(디벗방송, 학내망 등)</li> <li>▸ 공통위탁용역(공기질, 수질검사)</li> </ul>

⇒ 「학교통합지원과」 업무분장은 부서 신설 방향(교육·행정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과 인력 규모,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본청 관리 부서와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구성 예정

## ○ 개편 내용

- 학교요청사항에 대해 **종합적 해결방안**을 제시·지원하는 **학교통합지원 체제 회복**
- 학교의 행정업무 경감을 통하여 **교육활동 및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학교공통업무, 교직원간 **갈등업무** 등 체감도 높은 실질적 지원을 통해 **학교자치 실현 및 학교 구성원간 협력문화 기반 마련**
- 각 부서 내 학교지원 사무 중 학교통합지원과로 배치하여 효율성, 현장 대응성이 강화되는 업무 이관\*

\* 재정지원과에서 이관: 안전(통학로, 재난) 및 교육공무직(전보, 인건비) 업무

## Ⅲ 행정사항

---

- 부서 신설(학교통합지원과)에 따른 소요예산은 예비비로 지원 예정
  - ※ 환경개선 공사 및 집기구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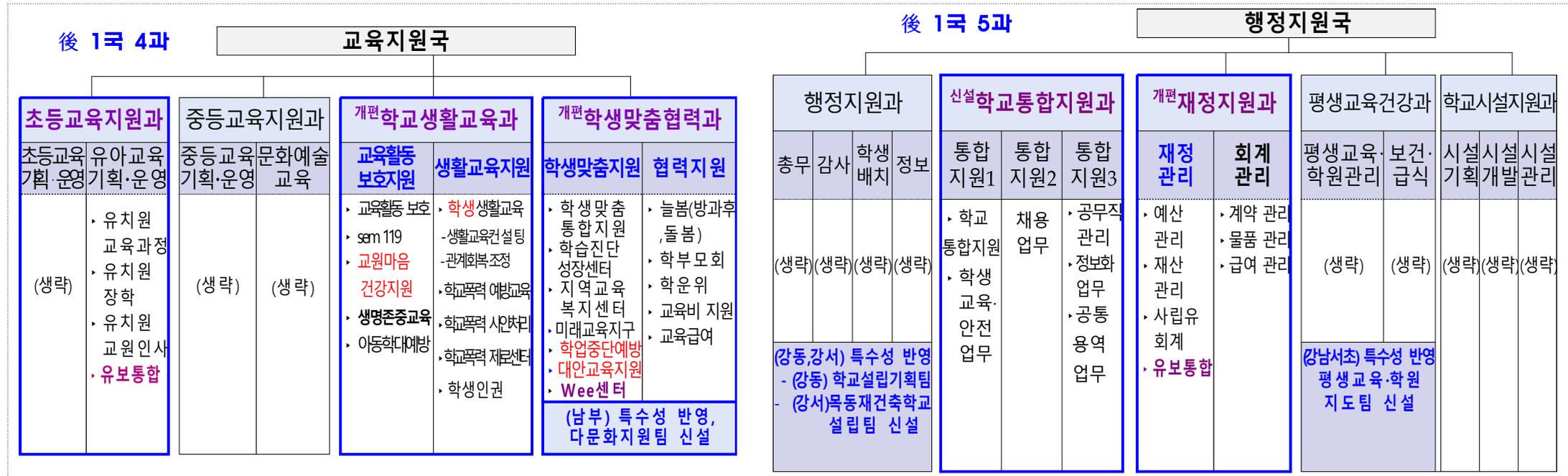
붙임 1. 교육지원청 개편 조직도 1부

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붙임1】 교육지원청 개편 조직도 [2국 8과 → 2국 9과] ※ [신설] 행정지원국 내 「학교통합지원과」**



※ 적색표시 사무: 신설학교통합지원과로 이관되는 사무



## 【붙임 2】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5년 6월 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1. 개정이유

- 학생과 학교지원기능 강화 및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체계 구축을 위한 2025. 7. 1.자 조직개편 사항 반영
- 학교에 다가가는 협력행정 실현 등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기능 조정, 부서 신설, 명칭 변경 사항 등 반영
- 청사이전추진단의 사무분장 정비를 통해 업무 추진의 명확성 확보 등

## 2. 주요내용

- 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및 행정지원국 내 과 직제 조정, 명칭 변경 및 사무 조정 등(안 제58조 ~ 제59조)
- 교육지원국 내 과 직제를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학교생활교육과 및 학생맞춤협력과 순으로 조정
  - 행정지원국 내 과 직제를 행정지원과, 학교통합지원과, 재정지원과, 평생교육건강과 및 학교시설지원과 순으로 조정
- 나. 행정지원국 내 학교통합지원과 신설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일부 사무 조정(안 제58조)
- 다. 청사이전추진단 분장사무 중 ‘교직원 치유·회복 연수원 건립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11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2]

-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 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 3)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나. 예산조치: 예비비 조치

다. 협의: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음

라. 기타

- 1)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별첨 1]
- 2) 입법예고: 2025. 5. 19. ~ 5. 26. <7일>
-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별첨 1】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30호를 제3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제5항제43호 및 제4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5호부터 제52호까지를 각각 제52호부터 제5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5호부터 제5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5.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업무 총괄·기획

46. 서울특별시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47.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총괄

48. 교육활동 침해예방 및 대응 기획·운영

49. 교원 정신(마음)건강 증진 기획·운영

50.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 총괄·기획

51.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총괄

제10조제7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유보통합 관련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 통합지원

제11조제7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육지원국에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학교생활교육과 및 학생맞춤협력과를 둔다.

② 초등교육지원과장 및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학교생활교육과장 및 학생맞춤협력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58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통합지원센터장”을 “학교생활교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학생인권 및 교권보호”를 “학생인권 교육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육활동보호 지원 업무 총괄·기획
13. 교육활동 침해사안 상담 및 행정심판, 소송에 관한 사항
14.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전담변호사 운영
15.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16.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조사·대응
17.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지원
18. 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지원
19. 생활교육 지원단 및 생활교육법률지원단 운영
20.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제58조제6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협력복지과장”을 “학생맞춤협력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운영

제58조제3항(중전의 제5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유보통합 교육과정 업무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9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를 “행정지원과, 학교통합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를

“행정지원과장, 학교통합지원과장 및”으로, “지방기술서기관이나 지방공업사무관”을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학교통합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활동·행정지원 업무 총괄·기획
2. 학교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및 콜센터 운영
3. 학교지원업무 발굴 및 모니터링
4. 학교인력채용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원 정기승급 및 호봉 재확정에 관한 사항
6. 교과서 수급관리
7. 교육공무직원의 인사노무관리
8.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9. 등하굣길(통학로) 교통안전 사업
10. 통학버스 운영지원 및 안전점검(학원 제외)
11. 학교 CCTV 관리 지원
12.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업무지원
13. 학교 정보화 지원체계(테크센터) 운영 및 지원
14. 그 밖의 학교행정업무 경감에 관한 사항

제59조제5항(중전의 제4항)제7호,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유보통합 행·재정 업무에 관한 사항

##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기획조정실) ① ~ ⑤ (생략)</p> <p>⑥ 학생맞춤지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p> <p>1. ~ 29. (생략)</p> <p><u>&lt;신 설&gt;</u></p> <p>30. (생략)</p> <p>⑦·⑧ (생략)</p> <p>제9조(교육정책국) ① ~ ④ (생략)</p> <p>⑤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p> <p>1. ~ 41. (생략)</p> <p>42. 삭 제</p> <p>43. <u>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u></p> <p>44. <u>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제8조(기획조정실)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p> <p>1. ~ 29. (현행과 같음)</p> <p><u>30.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u></p> <p><u>31. (현행 제30호와 같음)</u></p> <p>⑦·⑧ (현행과 같음)</p> <p>제9조(교육정책국)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p> <p>1. ~ 41.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u>&lt;삭 제&gt;</u></p> <p><u>45.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업무 총괄·기획</u></p> <p><u>46. 서울특별시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u></p> <p><u>47.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총괄</u></p> <p><u>48. 교육활동 침해예방 및 대응 기획·운영</u></p>

<신 설>

<신 설>

<신 설>

45. ~ 52. (생 략)

⑥·⑦ (생 략)

제10조(평생진로교육국) ① ~ ⑥  
(생 략)

⑦ 특수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20. (생 략)

<신 설>

제11조(교육행정국) ① ~ ⑥ (생  
략)

⑦ 청사이전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 략)

3. 교직원 치유·회복 연수원  
건립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제58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  
국에 학교통합지원센터, 교육협  
력복지과, 초등교육지원과 및  
중등교육지원과를 둔다.

49. 교원 정신(마음)건강 증진  
기획·운영

50.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 총  
괄·기획

51.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총괄

52. ~ 59. (현행 제45호부터  
제52호까지와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제10조(평생진로교육국)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 20. (현행과 같음)

21. 유보통합 관련 어린이집 장  
애 영유아 통합지원

제11조(교육행정국) ① ~ ⑥ (현  
행과 같음)

⑦ -----  
-----.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6. (현행과 같음)

제58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  
국에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  
지원과, 학교생활교육과 및 학  
생맞춤협력과를 둔다.

② 학교통합지원센터장 및 교육협력복지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초등교육지원과장 및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학교통합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활동·행정지원 업무 총괄·기획 및 통합지원 콜센터 운영

2.·3. 삭 제

4. 보결담당 시간강사·행정단체 인력풀 구성에 관한 사항

5. 교원 호봉 재획정에 관한 사항

6. ~ 8. (생략)

9. 학생인권 및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10. 학교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11. (생략)

12.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설>

<신설>

<신설>

② 초등교육지원과장 및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학교생활교육과장 및 학생맞춤협력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⑤ 학교생활교육과장-----  
-----.

1. 교육활동보호 지원 업무 총괄·기획

<삭제>

<삭제>

6. ~ 8. (현행과 같음)

9. 학생인권 교육 및 -----  
-----

<삭제>

11. (현행과 같음)

<삭제>

13. 교육활동 침해사안 상담 및 행정심판, 소송에 관한 사항

14.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전담변호사 운영

15.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교육협력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1. ~ 14. (생 략)

15. 초·중학교 교과서 수급관리

16. ~ 18. (생 략)

⑤ 초등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16. (생 략)

<신 설>

<신 설>

⑥ (생 략)

제59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

16.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조사·대응

17.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지원

18. 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지원

19. 생활교육 지원단 및 생활교육법률지원단 운영

20.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⑥ 학생맞춤협력과장-----  
-----.

1.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운영

2. ~ 15. (현행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

<삭 제>

17. ~ 19. (현행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와 같음)

③ -----  
-----.

1. ~ 16. (현행과 같음)

17. 유보통합 교육과정 업무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현행 제6항과 같음)

제59조(행정지원국) ① -----

국에 행정지원과, 재정지원과, 평생교육건강과 및 학교시설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재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학교시설지원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이나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32. (생략)
  33. 학교 정보화 지원체계 운영 및 지원
  34. (생략)
- <신설>

--- 행정지원과, 학교통합지원과-----  
-----.

② 행정지원과장, 학교통합지원과장 및 -----  
-----  
-----  
----- 지방공업사무관 -----  
-----

③ -----  
-----.

1. ~ 32. (현행과 같음)
- <삭제>

34. (현행과 같음)

④ 학교통합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활동·행정지원 업무 총괄·기획
2. 학교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및 콜센터 운영
3. 학교지원업무 발굴 및 모니터링
4. 학교인력채용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재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7.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8. (생략)
9. 어린이 등하굣길(통학로) 교통안전 사업
10. 통학버스 운영지원 및 안전 점검(학원 제외)
11. 학교 CCTV 관리 지원
12.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5. 교원 정기승급 및 호봉 재확정에 관한 사항
6. 교과서 수급관리
7. 교육공무직원의 인사노무관리
8.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9. 등하굣길(통학로) 교통안전 사업
10. 통학버스 운영지원 및 안전 점검(학원 제외)
11. 학교 CCTV 관리 지원
12.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업무지원
13. 학교 정보화 지원체계(테크센터) 운영 및 지원
14. 그 밖의 학교행정업무 경감에 관한 사항

⑤ -----  
-----.

1. ~ 6. (현행과 같음)  
<삭제>
8. (현행과 같음)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p><u>예방 업무지원</u></p> <p>13. ~ 18. (생략)</p> <p><u>19. 교육공무직원의 인사노무</u> <u>관리</u></p> <p><u>&lt;신설&gt;</u></p> <p><u>⑤·⑥</u> (생략)</p>	<p>13. ~ 18. (현행과 같음)</p> <p><u>&lt;삭제&gt;</u></p> <p><u>20. 유보통합 행·재정 업무에</u> <u>관한 사항</u></p> <p><u>⑥·⑦</u>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p>
--	--

## 【별첨 2】 관계 법규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0601호]

제10조(과·담당관 등의 설치)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3장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등의 기구

제11조(교육지원청 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교육지원청 국·과(담당관)·센터의 설치 및 국장·과장(담당관)·센터장의 사무 분장은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되, 국·과(담당관)·센터의 설치기준 및 국장·과장(담당관)·센터장의 직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 <기관 직급기준>

구분	직급
가. 국장	장학관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나. 과장(담당관)	장학관 또는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다. 센터장	장학사 또는 6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본청)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및 과·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의 하부조직과 소속기관의 설치 및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78호, 2024. 2.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내지 제4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